

〈2025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〉 면세점(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) 입점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와 제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'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위 사업의 일환으로 [면세점(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) 입점 지원사업]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,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. 02. 18.

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장

1 사업목적

- 문화창작품에 대한 홍보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제주도내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확대
-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안정적 판로 구축 및 장기적인 사업 성장 지원

2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면세점(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) 입점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

[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(JTO지정면세점*)]

*"지정면세점"이란 특례규정(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)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·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 중 제주세관장(이하 "세관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.

「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(정의)

- 사업기간 : 2025년 2월 ~ 2025년 12월

- 입점기간 : 입점 후 ~ 2025년 12월

※ 3월 중 입점예정. 정식입점 통해서 장기운영 가능. 추후협의

- 사업대상 :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(시행 2024.7.10.) 제2조(정의) 1호의 “문화산업” 관련 문화창작품의 법적권리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

[문화산업진흥 기본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4. 10. 22.>

1.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
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- 마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
- 바.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- 사업내용

- 사업장소 :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(JTO지정면세점) 입구



- 지원규모 : 사업대상 기업 2개소 내외

- ※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유통판매 가능한 문화창작품(창작품 IP의 원 저작권자 및 사업권자)을 보유한 국내(제주도내) 사업자(법인, 개인)

- 모집품목 :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지정품목

- ※ 「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(시행 2025.1.3.)」 제10조(면세 물품의 종류) 별표의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내 한정. 단, 품목 중 “주류·담배·시계·인삼류·넥타이·라이터” 불가

○ 지원내용 : 면세점입점, 홍보마케팅비 지원, 기타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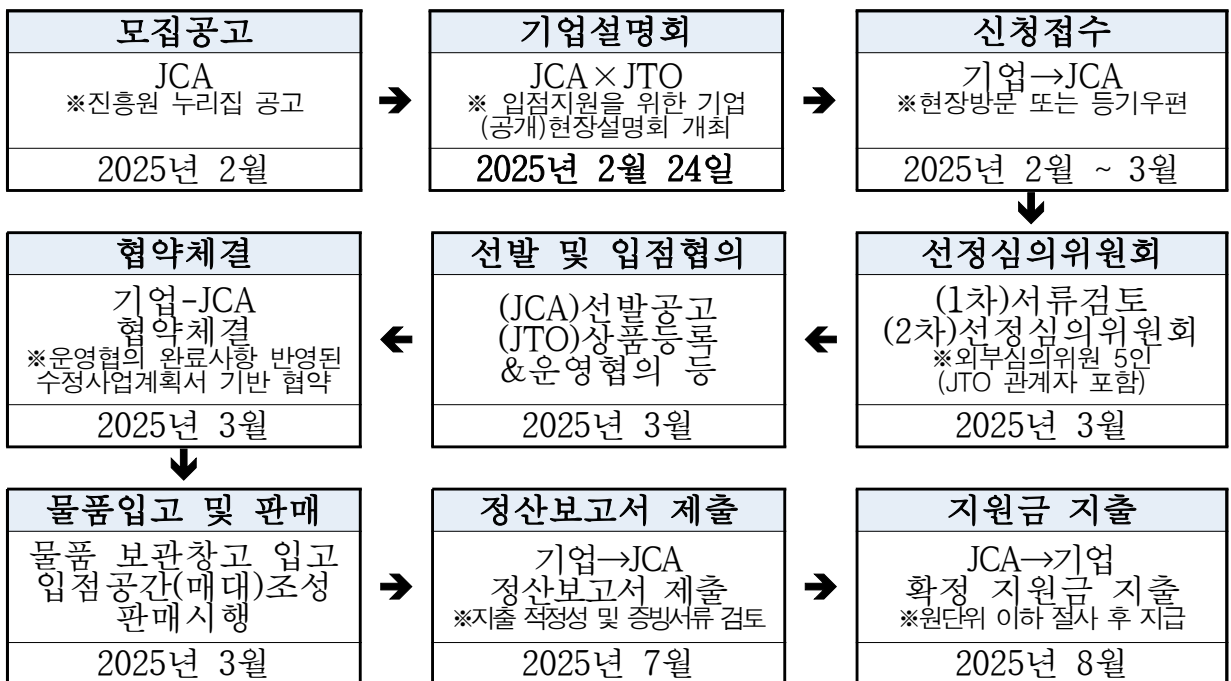
항목	세부내역	
면세점입점	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(JTO지정면세점) 입점	
홍보 마케팅비	입점매장 홍보마케팅비 지원(선발건별 최대 1,000만원)	
	일반수용비	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책자·전단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 간판등의 안내·홍보물 제작비 물품위탁취급수수료, 물품의 운송대
	임차료	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임차료
	공공요금 및 제세	우편물 발송대
	광고선전비	TV, 신문,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
※ 집행 건 별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. 집행 가용 예산 범위 담당자 협의 후 집행 ※ 입점매장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만 집행 및 정산 가능 ※ 면세점 입점매장 매대 조성 및 기자재 제작 등에 관한 비용은 제주관광공사 가용 예산 범위 내 일부 지원 예정(사업종료 후, 제주관광공사 측으로 반납해야 함). 기업 별 매대 디자인에 따른 가용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참가기업 자부담		
기타	제주콘텐츠진흥원/제주관광공사 보유 홍보매체 게재 지원	

○ 지원조건

- 문화창작품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양산 및 판매 가능한 기업
- 입점매장 판매·관리 인력 고용 및 관리 필수(기업당 1인 이상)
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. 집행 가능 범위 내 집행 건 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및 최종지급액 산정 후 지급
- 입점지원금 세부내역 외 명세는 참가기업 자부담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(일정 조정예정)

□ **사업추진절차(안)**



※ 제주콘텐츠진흥원 JCA 표기, 제주관광공사 JTO 표기

※ 해당추진절차는 실제 업무 추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3

신청접수

□ 신청기간

- 공고기간 : 2025년 2월 18(화) ~ 3월 4일(화)
- 접수기간 : 2025년 2월 24일(월) ~ 3월 4일(화) 18:00까지
 - ※ 방문접수는 평일 09:00 ~ 18:00 접수 가능하며,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
 - ※ 우편접수는 모집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

□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

- 서류접수 :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(<http://www.ofjeju.kr>) 내 ‘사업안내>사업신청’ 공고배너 클릭 후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 받아 서식 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
- 제품접수 : 상품품평을 위한 입점예정상품 건당 1점

□ 제출사항: 서류 및 제품 제출

- 제출서류: “제출서식_JCA홍보마케팅.hwp” 다운로드

연번	분류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필수	신청서 및 계획서	1부	서식 다운로드 후, 붙임1·2 작성
2		사업 참여 서약서	1부	서식 다운로드 후, 붙임3 작성
3	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1부	서식 다운로드 후, 붙임4 작성
4		평가위원 추천표	1부	서식 다운로드 후, 붙임5 작성
5	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각1부	(법인) 사업자등록증/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(개인) 사업자등록증 1부
6	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각1부	각 1부 제출
7		최근 2년간 재무제표	각1부	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23-2024년도) ※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(개인사업자, 단체 등)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, 종합소득세신고서 1부
8	자율	기타 추가자료	각1부	주요계약서(저작권, 배급, 납품서 등) 신청기업 및 참여인력 실적 문화창작품 참고자료(이미지, 파일, 인쇄물 등) 기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(인증서 등)

○ 제출제품

연번	분류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필수	입점예정상품	1식	실물제출. 품목별 서식 내 [별첨 5] 부차 필수 심의위원회 이후 기업 직접 회수(일정추후통보)

□ 접수 및 문의처

분류	제출서류
접수처	(63270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 재단법인제주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확산팀
문의	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확산팀 김보배 ☎ 064-735-0601 ✉ ormrbb@ofjeju.kr

4 심의절차

□ 심의방식 : 서류검토 및 선정심의위원회(상품품평 포함)를 통한 선발

회차	방식	선정기준
1차	서류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요건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 기준 - 사업담당자 신청자격 요건 확인
2차	선정 심의 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천표 집계 따른 5인 이내 위원 섭외 및 위촉 - 5인 구성: 당연직 1인(JTO) + 선정직 4인(추천 및 섭외) ※ 본 사업은 "JTO지정면세점 입점"으로 5인의 위원 중 1인은 해당 면세점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연직으로 위촉하며, 선정심의위원회 참여 예정 ※ 선정직 4인 선발을 위해 선발인원 3배수의 위원 후보군 조성. 공정성을 위해 후보군 미공개하며,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사업신청자가 각각 4개 숫자를 선택하여 '평가위원 추천표' 제출. 지정된 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섭외 진행하여 평가위원 선정 - 서류평가 및 상품품평 종합평가 진행 ○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점수는 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심의점수를 산정 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순 선정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- 평가항목: (서류)사업계획적합성, 사업운영관리역량
(상품)완성도, 경쟁력
- 배점내역

평가항목		평가주안점	배점
서류	사업계획 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취지 이해도와 부합도 ○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	10
	사업운영 관리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 판매·홍보 계획의 우수성 ○ 목표시장에서의 예상 성과 부합도 ○ 안정적 상품공급 및 물류관리 능력 	30
합계			40

상품	완성도	○ 제출상품의 완성도(포장재, 바코드 등) ○ 면세점 매대 조성 및 판매 적합성	30	
	경쟁력	○ 상품 품질 및 가격 경쟁력 ○ 트렌드 반영한 차별성 강화 제품 ○ 시장 성공 가능성이 우수한 제품	30	
합계			60	
총계			100	
우대가점	○ 우대가점: 최대 5점 부여		5	
	분류	가점사항		가점
	입주	신청일 기준 제주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(인프라 포함)		2점
	ESG	신청일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(예비포함)		1점
		신청일 기준 제주콘텐츠진흥원 온라인캠퍼스 ESG강의 이수 기업		1점
DB	신청일 기준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및 인적자원 DB 등록기업	1점		
※ ESG 강의 경우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이수 필수(이수확인서 제출)				
※ [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및 인적자원 DB] 등록 갱신 여부 확인 필수				

- ※ 합산 점수가 동일업체 2건 이상일 경우, 상품 합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서류를 우선순위로 함
- ※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지원자만 적용. 우대가점 포함 평가점수 총계는 100점을 넘지 아니함

결과발표 :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 공지 및 개별연락 예정

5 유의사항

신청 유의사항

-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원활한 사업 신청을 위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함
 - ※ 일시/장소 : 2025년 2월 24일(월) 14:00 ICC 2층 소회의실 202A
-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. 제출서류는 신청자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반환하지 않음. 단,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추가 제출된 자료는 이미 제출된 자료와 같은 효력을 가짐
- 해당 사항의 미숙지,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,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증빙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, 평가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
- 적격자가 없을 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제외대상 내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회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

[신청제외대상]

-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등의 징수금액을 미납 중인 경우
- 신청일 현재,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일 현재,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(징수유예 포함)이거나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(기업)
 - ※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
 - ※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 - ※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 등)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,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타인의 작품을 모작, 표적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콘텐츠를 활용한 자
- 한국 이외의 국적으로 은행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자
- 기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- 입점품목은 「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0조 [별표]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지정품목에 한함. 단, 지정품목 중 “주류·담배·시계·인삼류·넥타이·라이터” 불가

- 업체당 입점품목 수 제한 없음. 선정 완료 후 협의하여 최종결정

□ 선발 후 유의사항

- 다음의 경우 선정취소, 협약체결 중지,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, 제재 내용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 내용 등)을 진흥원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음

[제재 사유]

-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
-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
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청탁·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협약체결 이후 협약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
-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
- 기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「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」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

- 집행 건 별 정산보고서 내 증빙자료 제출 필수

카드지출	카드매출전표
계좌이체	계좌이체 확인증 외 다음을 첨부 - 법인 또는 업체간 거래: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- 개인 간 거래: 원천징수영수증(소득신고 必), 신분증, 통장사본

- 입점매장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집행한 하단 표의 집행 비목만 인정. 사업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집행추천

일반수용비	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책자·전단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 간판등의 안내·홍보물 제작비 물품위탁취급수수료, 물품의 운송대
임차료	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임차료
공공요금 및 제세	우편물 발송대
광고선전비	TV, 신문,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

- 협약체결 이후 집행 건만 인정. 선정기업이 비목에 맞게 선지출하고,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토 완료에 따라 지원금 지급함(후지원)
 - 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
 - 면세점 입점매장 매대 조성 및 기자재 제작 등에 관한 비용은 제주관광공사 가용 예산 범위 내 일부 지원 예정(사업종료 후, 제작된 기자재 제주관광공사 측 반납). 기업별 매장 디자인에 따른 가용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참가기업 자부담
- 입점매장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 세부내역 외 명세는 참가기업 자부담
- 각종 행사 운영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, 제주관광공사를 비롯한 지원기관의 로고 노출 및 지원사실 표기
- 확정된 협약기한 내에 수행 계획상의 내용을 추진하여 협약 완료일에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을 증빙해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협약 완료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기타 유의사항
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규정집 <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>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해당 지원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,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이 주최(관)하는 국내·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(이용허락권)
 - ※ 이용허락권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,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임의변경, 방송·전시·교육·광고·홍보 등 수상작의 활용과 타 기관·단체에 대한 지원 포함(전시, 녹화, 도록 수록·배포, 교과서 게재 등)
- 제작된 콘텐츠의 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는 공개 이전 직접 지식재산권을 검토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함